
— 2018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특정감사 —
재심의 및 추가처분 결과

2019. 3.

부 천 시

|| 목 차 ||

I . 재심의 감사 개요 1

1. 재심의 감사배경 / 1
2. 재심의 감사 실시 과정 / 1
3. 심의사항 / 1

II . 재심의 결과 2

1. 재심의 결과 총괄표 / 2
2. 재심의 결정사항(요약) / 2

III . 추가처분 결과 9

I 재심의 감사 개요

1. 재심의 감사배경

- 부천시에서 2018. 8. 22.부터 8. 31.까지 8일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고 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총 14건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 문책 등 처분 요구를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는 신분상 조치 및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5건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28조(재심의 신청 처리 등)에 따라 재심의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재심의 감사 실시 과정

- 재심의에 따른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재심의 감사담당자 4명을 지정하여 재심의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고,
-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2019. 1. 31.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3. 심의사항

- 재심의 대상은 신분상 조치 부당 4건, 통보 처분 부당 1건으로 총 5건을 심의하였다.
 - ① 청탁금지법 위반
 - ② 직원 논문 표절 의혹 관련
 - ③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
 - ④ ○○○○ 추천위원 부당 제외 지시
 - ⑤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소홀

II 재심의 결과

1. 재심의 결과 총괄표

연번	지 적 건 명	심의결과
1	청탁금지법 위반	기 각
2	직원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일부인용
3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	기 각
4	○○○○○ 추천위원 부당 제외 지시	기 각
5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소홀	기 각

2. 재심의 결정사항 (요약)

1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재심의

- 이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직원 논문 표절 관련 재심의

가. 재심의 신청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 [지적사항]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는 2016. 10월 ‘○○○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수도권 지역 만화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논문을 등록하였고, 같은 해 12월 논문 심사가 통과됨.
 - 한편, 진흥원에서는 2016. 4월 ‘만화창작 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 사업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월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음.

- 진흥원의 용역보고서와 A의 석사논문의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처분요구사항]

- 진흥원에서 논문을 인준한 ♣♣대학교에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

나. 재심의 취지 요약

- 재심의 취지: 처분 부당 및 취소

- ① 진흥원에서 개인 학위취득에 제출된 논문의 표절여부는 진흥원 임직원의 의무 범위 및 위반 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대학교에 논문 표절 여부 검토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함.
- ② A는 이미 논문에 대하여 2018. 4월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처분이 되어 진흥원 인사위원회 결정까지 통지한 사항으로 이번 지적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변경하라는 압력으로 해석 될 수 있는바, 감사실 통보는 부당함.

다. 재심의 결과

[①에 대한 판단]

- 감사관실에서는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21조에 따라 통보 처분하였으나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 제시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보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2018. 2.)에 따라 재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인용함.

▶ 따라서, 재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할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 결정**

[②에 대한 판단]

○ 진흥원 내부 자료의 부적정한 사적 이용과는 별도로 그 이용이 학문적으로 표절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실시한 감사로 이에 따른 통보 처분임.

▶ 따라서, 재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

3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 관련 재심의

가. 재심의 신청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에의 내용

[지적사항]

○ 진흥원에서는 2017. 12.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직원 보직 부여 및 직무대행 지정 인사를 부당하게 하였음.

- 2018. 1. 1.자 인사발령
 - A ☆☆본부장(1급)의 보직해제 ⇨ ▣▣▣▣국장 보직(2급)
- 2018. 1. 22.자 인사발령
 - B 대리(5급) ⇨ ●●●●팀장 직무대행
- 2018. 3. 6.자 인사발령
 - A ▣▣▣▣국장 ⇨ ♣♣♣부장(1급) 겸직
 - C(3급) 직위해제 후 ⇨ D ◆◆◆팀장 직무대행(4급)
- 2018. 8. 7.자 인사발령
 - E 전 ▤▤▤팀장 복직 ⇨ ▣▣▣▣국 직원으로 발령

○ 진흥원 자체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문책요구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2018. 6. 22. 자로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건의로 갈음하였고, 감사업무와 인사업무를 같은 팀 내에 사무분장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음.

[처분요구사항]

○ 부적정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인사규정에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 인사담당 팀장(G)에 대하여 「문책」, 기타 관련자(A, H, J)에 대하여 「훈계」, Y 전 ♀♀장에 대하여 「훈계」

나. 재심의 취지 요약

- 재심의 취지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 훈계 조치 부당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 지적은 편파적 조사 및 객관적·공정성이 결여된 감사

다. 재심의 결과

- 감사담당자들은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처분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자체 심의 및 감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감사 처분을 확정하였음.
 -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 부적정에 대한 처분은 인사발령 공문 및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진흥원 자체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사 부서 관련자들의 업무 소홀 책임을 물은 것이며, 업무의 성질 및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였음.
- ▶ 따라서, 재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

가. 재심의 신청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지적사항]

- ♣♣♣♣부장 A는 진흥원 「임직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2018. ○○○○ ○ 추천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 운영 규칙」에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떠한 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팀장이 보고한 추천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그러나, 특정 위원을 싫어한다는 원장의 뜻을 팀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정 위원을 제외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시를 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팀장은 1차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위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의사 전달이 있었을 때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추천위원을 규정에 맞도록 구성해야 하는데도 위원을 부당하게 제외하였음.

[처분요구사항]

-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A, B)에 대하여 「훈계」

나. 재심의 취지 요약

- 재심의 취지: 「훈계」 처분 취소
 - 부당제외 지시를 한 적이 없음.
 - 상급자의 지시와 규정 사이에서 실무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행동강령관련 직무 교육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였음

다. 재심의 결과

- 본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특정한 위원을 제외하도록 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은 부당 지시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기 위해 진흥원 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사실이 없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것에 대하여 책임은 물은 것으로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재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

5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소홀 관련 재심의
----------	------------------------------------

가. 재심의 신청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외의 내용

[지적사항]

- 진흥원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문서는 보안 문서로 일반 직원에게 열람 제한이 있음에도, A에게 보안문서 열람 권한이 부적정하게 부여되어 보안문서 열람이 가능하였음.
- 진흥원 「전산정보 업무 관리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폐기 등을 정보화 책임자의 승인 하에 수행하고 정보화 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변경·폐기 업무에 대한 수기 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권한 없는 직원에게 보안문서 등 전체 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사용자 권한 관리를 소홀히 운영하였음.

[처분요구사항]

-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G 등 5명, 실무자)에 대하여 「훈계」

나. 재심의 취지 요약

○ 재심의 취지: 「훈계」 처분 취소

- 시스템 도입 과정상의 문제가 아닌 도입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타 업무로 발령된 지 만 5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함.

다. 재심의 결과

- 감사관실에서 처분한 「훈계」는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진흥원 「취업규정」 제54조(징계사유의 시효)와 상충되지 않으며, 시스템 도입 기간 이외에도 2015. 10. 1. ~ 2017. 9. 1.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정보화 책임 부서의 팀장 직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 소홀의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재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

Ⅲ 추가처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추가처분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부분은 통보 결과,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관련자(♣♣♣, ◇◇◇)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요구함.